

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 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5. .
제출자	거창군수

□ 제정이유

- 국민들로부터 평생학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(2001. 1. 29 법률 제6400 호) , 2003 9 1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우리 군이 「 」 지정됨에 따라
-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·추진 및 추진 하도록 규정함(2)
-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(4)
-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거창군평생학습센터를 군청 내에 설치하도록 함(10)
- 평생학습센터 소속하에 거창군평생교육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함(14)
-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()

□ 관련() 기

- 평생교육법 제9 16 :

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

제1 장 총 칙

제1 ()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(" ") 9 :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" "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()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.

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·

제3 ()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 장 거창군평생학습협의회

제4 ()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거창군평생학습협의회(" ")

제5 (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 ,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6 () ① |의회는 회장 1 , 부회장 1 , 감사 1 , 15 !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|장은 부군수가 되고,

③ |원은 다음 각호의 1

1. 도 · 시의원 및 교육위원

2. , , , , ,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또는 교사 등

④ |의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. ,

⑤ |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 ,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.

제7 () ① |원의 임기는 2 , .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|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 () ① |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|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 () ① |의회는 다음 각호의 1 |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2.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

3. 3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

② |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|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1 거창군평생학습센터

제10 () 법 제93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거창군 평생학습센터(" ") .

제11 (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" "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
2.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
3. " " 급
4.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5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6.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2 ()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제13 ()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·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

제14 () ① 평생학습센터 소속하에 거창군평생교육원 등을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거창군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하고, 위탁 운영할 시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.

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 (" ")군수는 군내 유관기관· 단체, " " ,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· " " . 이용할 수 있다.

제16 (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(2003. 4. 8. 1665) .
- ③ ()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창군평생교육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.